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9. 11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9. 1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98. 9.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장상진)

가. 제안이유

○ 소사역 문예전시관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부천역 홍보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를 폐지하고 문예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

나. 주요골자

○ 전시관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부천역 문예전시관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 소사역 문예전시관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번지

○ 전시관의 기능(안 제3조)

-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미술, 사진, 도공예, 건축설계품, 서예, 분재, 꽃꽂이 등의 전시
-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등

○ 전시관의 관리(안 제4조, 제5조)

- 관리부서 : 시장이 관리하되 담당부서의 장에게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 위탁관리 :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 등에 위탁 가능

○ 전시관의 사용(안 제7조, 제8조)

-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용허가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 사용료 1일 30,000원

○ 사용료 등의 반환(안 제10조)

- 관리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전시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전시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을 포기한 경우

○ 사용제한(안 제13조)

-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시설물 또는 부속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등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 조례는 2대 의회에서 유보되었다가 폐지된 조례죠? ○ 2대 의회에서 유보된 사유는 무엇이죠?	○ 예, 맞습니다. ○ 문예전시관의 관리가 시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재고요청이 있어 유보되었습니다.

○ 제9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공공목적이란 어떤 경우입니까?	○ 일반 학생들의 창작활동으로 전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 소사전철역 전시관은 우리 시 재산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 문예전시관이란 명칭으로 할 때에는 전시관 사용이 문화, 예술 분야에만 한정된다고 생각되는데요?	○ 주로 문화예술활동에 따른 미술, 사진, 도공예, 서예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예감시관을 둘 경우 예산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 예산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 위탁관리 조항은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 같은데요?	○ 공공시설 관리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 전시관의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야가 문화,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명예감시관 용어가 적합치 않아 명예봉사관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 좋습니다.
○ 제6조 전시관의 임대는 장기임대를 뜻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별지6의 허가신청서가 대관료를 내고 관람을 유료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유료화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네, 그렇습니다.
○ 전시계획은 연중 계획으로 연초에 수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조례 명칭을 부천시전시관으로 바꾸자는 소수의견 있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16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11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 수정이유

○ 안 제5조의 위탁관리, 안 제6조의 임대, 별지 문예전시관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중 입장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사용 전의 양도 또는 대여금지 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이용주체인 시민들로 하여금 전시관의 사용,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정함

□ 주요골자

○ 안 제5조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술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

○ 안 제6조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전시관을 임대할 수 있다"를 삭제

○ 안 제9조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를 신설

○ 별지 문예전시관 허가신청서 양식 중 "입장료 징수여부와 금액"을 삭제함.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중 "명예감시관"을 "명예봉사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5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전시관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하며,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사용허가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제10조 내지 제14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별지서식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6. 입장예정인원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전시관 관리) ①(생략) ②시장은 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명예감시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전시관 관리) ①(제정안과 같음) ②····· ·····명예봉사관······
제5조(위탁관리)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임대)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전시관을 임대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사용허가) ①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용허가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허가) ①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전시관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하며,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사용허가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 제10조(생략)	제6조~제8조(제정안 제8조 내지 제10조와 같음)
(신 설)	제9조(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제15조(생략)	제10조～제14조(제정안 제11조 내지 제15조와 같음)
(별지)	(별지)
○○○문예전시관사용허가신청서	○○○문예전시관사용허가신청서
1~5 (생략)	1~5 (제정안과 같음)
6. 입장예정인원 및 입장료 징수여부와 금액	6. 입장예정인원
7~8 (생략)	7~8 (제정안과 같음)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료를 미리 납입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수정안 포함]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발전 등을 위하여 부천시문예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전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천역 문예전시관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2. 소사역 문예전시관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번지

제3조(기능)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미술, 사진, 도공예, 건축설계품, 서예, 분재, 꽃꽂이 등의 전시
2.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3. 시민의 취미모임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을 위한 장소제공
4.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시관 관리) ①전시관은 시장이 관리하되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시장은 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명예봉사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전시관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사용허가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①전시관의 사용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구분	기 준	요 액	비 고
전시관 사용	1일	30,000원	

②사용료는 전시시설 설치일부터 사용 후 원상복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금액은 사용허가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리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전시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2. 전시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설비) 사용자가 전시관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 ①사용자는 전시관의 사용중 시설물이나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사용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 또는 부속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조례의 위반 또는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전시관의 관리운영상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13조(이용제한) 시장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이외에는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부천시홍보전시관은 이 조례에 의한 전시관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 및 부천시홍보전시관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문예전시관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
2. 사용목적 :
3. 사용기간 및 시간 :
4. 사용방법 :
5. 사용상 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개요 :
6. 입장예정인원 :
7. 사용료 :
8. 기 타 :

○○○ 문예전시관 경유	확
제 호	인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 제5조의 규정의 의거 위와 같이 전시관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료를 미리 납입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또는 단체명

대 표 자 성 명 (인)

부천시장 귀하